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 · 군 · 구), 시・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